

- (앞쪽)
-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2호서식] <개정 2024. 6. 18.>
- 수수료: 없음

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

제출서류

-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(원본도 함께 제시)
- 최종학력증명서
- 자격증 사본(해당자만 제출)

접수번호:

접수일:

처리기간: 5일

1. 신고인 정보

이름	주민등록번호:	사진 (3cm × 4cm)
주소	(연락처:)	
학력 및 전공	(전자우편:)	
자격		
경력		

2. 신고내용

교습과목 및 교습비 등	교습과목	초등학교	중학교	고등학교	비고
		월 (1시간당 원 원)	월 (1시간당 원 원)	월 (1시간당 원 원)	
		월 (1시간당 원 원)	월 (1시간당 원 원)	월 (1시간당 원 원)	

※ 교습비등은 1명당 금액을 말합니다.
※ 비고란에는 초등학교, 중학교 및 고등학교별 교습인원을 적습니다.

교습장소

3. 서명 및 날인
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개인과외교습자)

(서명 또는 인)

○○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

처리 절차
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	접수 처리기관 교육지원청	→	검토 처리기관 교육지원청	→	결재 처리기관 교육지원청	→	신고증명서 발급
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※ 교습과목 및 교습비등

[illegible]